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해양경비법」 제12조에서는 해상검문검색을 위하여 선박을 정선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에는 정선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상검문검색 시, 정선 요구 방법 신설(안 제2조의3)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정선 요구 방법(신호기, 음향신호 등)과 함께 무선통신, 항공기를 이용한 정선 요구 방법을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정선 요구 방법)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박등을 정선시키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선박등에서 선장 등 운항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신호기 엘(L)의 계양
2.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사이렌, 뱃고동, 그 밖의 음향신호에 의한 엘(L)의 신호(단음 1회, 장음 1회, 단음 2회를 7초 간격으로 계속하는 신호)
3.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투광기에 의한 엘(L)의 신호(단광 1회, 장광 1회, 단광 2회를 7초 간격으로 계속하는 신호)
4. 마이크로폰 또는 육성(肉聲)
5. 무선통신

6. 항공기가 선박등의 상공에서 선회하거나 조명탄(또는 연막탄) 투하

② 제1항에서 “장음” 또는 “장광”이란 3초간 계속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하며, “단음” 또는 “단광”이란 1초간 계속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정선 요구 방법)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박등을 정선시키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선박등에서 선장 등 운항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신호기 엘(L)의 계양
2.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사이렌, 뱃고동, 그 밖의 음향신호에 의한 엘(L)의 신호(단음 1회, 장음 1회, 단음 2회를 7초 간격으로 계속하는 신호)
3.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투광기에 의한 엘

(L)의 신호(단광 1회, 장광 1회, 단광 2회를 7초 간격으로 계속하는 신호)

4. 마이크로폰 또는 육성(肉聲)

5. 무선통신

6. 항공기가 선박등의 상공에서 선회하거나 조명탄(또는 연막탄) 투하

② 제1항에서 “장음” 또는 “장광”이란 3초간 계속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하며, “단음” 또는 “단광”이란 1초간 계속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조의3(정선 요구 방법) ① 법</u> <u>제12조제1항에 따라 선박등을</u> <u>정선시키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u> <u>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u> <u>법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해당</u> <u>선박등에서 선장 등 운항자가</u> <u>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u> <u>야 한다.</u> <u>1.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u> <u>에 규정된 신호기 엘(L)의 계</u> <u>양</u> <u>2.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u> <u>에 규정된 사이렌, 뱃고동, 그</u> <u>밖의 음향신호에 의한 엘(L)</u> <u>의 신호(단음 1회, 장음 1회,</u> <u>단음 2회를 7초 간격으로 계</u> <u>속하는 신호)</u> <u>3.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u> <u>에 규정된 투광기에 의한 엘</u> <u>(L)의 신호(단광 1회, 장광 1</u> <u>회, 단광 2회를 7초 간격으로</u> <u>계속하는 신호)</u> <u>4. 마이크로폰 또는 육성(肉聲)</u> <u>5. 무선통신</u>

6. 항공기가 선박등의 상공에서
선회하거나 조명탄(또는 연막
탄) 투하

② 제1항에서 “장음” 또는 “장
광”이란 3초간 계속 소리를 울
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하
며, “단음” 또는 “단광”이란 1초
간 계속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